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27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40(중복)			매각 물건번호	2	작성 일자	2025. 12. 22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최상욱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25.1.13.강제경매개시결 정		배당요구종기	2025. 4. 14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신희정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4.02.07			
	732동 1103호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4.2.7.~20 26.2.7.	175,000,000		2024.2.7.	2024.1.19.	2025.4.23.	
<비고>										
신희정:배당요구종기 2025.4.14.경과 후 배당요구신청서 제출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27

[물건 2]

2. 1동의 건물의 표시

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711, 1713, 1714

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

732동

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29길 30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상 18층 공동주택(아파트)

1층 179.7734㎡

2층 170.6031㎡

3층 235.6576㎡

4층 235.6576㎡

5층 235.6576㎡

6층 235.6576㎡

7층 235.6576㎡

8층 235.6576㎡

9층 235.6576㎡

10층 235.6576㎡

11층 235.6576㎡

12층 235.6576㎡

13층 235.6576㎡

14층 235.6576㎡

15층 235.6576㎡

16층 235.6576㎡

17층 235.6576㎡

18층 235.6576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1층1103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59.9785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- 토지의 표시 : 1.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711
 대 39066.4m²
 2. 동 소 1713
 대 22230.6m²
 3. 동 소 1714
 대 6388.3m²

대지권의종류 : 1, 2, 3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, 2, 3. 67,685.3분의 33.0276

매각지분 전 소유권 중 갑구 1번 정순주 2분의 1 지분전부

감정평가액	179,500,000	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1.08	179,500,000	17,950,000
2회	2026.02.05	125,650,000	12,565,000
3회	2026.03.05	87,955,000	8,795,500
4회	2026.04.09	61,568,000	6,156,800

지분매각

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
